

13 朝鮮 市街地計劃關係法規集 조선 시가지계획 관계법규집

1935년 / 공학사(工學舍) / 529면 / 02.30-22 공91조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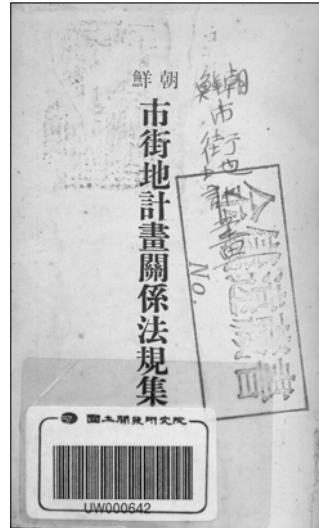
1935

년에 출판한 도시계획관계 법령집이다.

책의 크기는 13cm×8.5cm이고 총 분량은 529면이다. 수록된 법령은 ① 조선시가지계획령을 비롯하여, ② 조선토지 개량령, ③ 지세령(地稅令), ④ 토지 수용령, ⑤ 행정집행령, ⑥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 기념물 보존령 등 6개의 법과 이들 6개 법의 시행규칙

(지금의 대통령령 또는 각령)을 비롯해 기상참고표, 목욕탕 영업 취체(取締=단속)규칙, 여관업 취체규칙, 음식점영업 취체규칙, 창기(娼妓) 취체규칙, 원동기(原動機) 취체규칙, 인화질물 취체규칙, 총포·화기류 취체규칙, 묘지·화장장 및 화장 취체규칙, 사립 병원 취체규칙, 도살장 규칙, 도로 취체규칙, 경찰범 처벌규칙 등 20개의 규칙이 수록되어 있다.

일제강점시대 최고 통치기관인 조선총독부는 대만총독부와는 그 격이 달랐다. 첫째, 조선총독은 천황(天皇)의 직속이었다. 내각총리대신 밑에 있는 대신(大臣=장관)보다 격이 위였다. 둘째, 조선총독은 육군대장으로 보하고 대만총독은 해군장성으로 임명했다. 셋째, 조선총독에게는 제령권(制令權), 즉 입법권을 부여했으나 대만총독에게는 입법권을 주지 않았다. 넷째, 조선총독에게는 예산편성권을 주었는데 대만총독은 예산편성권도 없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의 국장은 일본서 대신을 지낸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대부



분 일본의 현지사(縣知事=우리의 도지사)를 지낸 사람들이었다.

조선총독은 스스로 법률제정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통치에 필요한 많은 법을 제정했는데 그 명칭은 ‘령(令)’으로 표현했다. ‘조선도로령’, ‘조선하천령’, ‘조선시가지계획령’, ‘토지수용령’ 또는 ‘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서 제정하는 법에는 ‘법(法)’자를 붙이고, 조선총독이 만든 법은 이를 ‘령(令)’이라 했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신문들은 ‘토지수용령 발동’ 하는 식으로 보도해 왔다.

‘조선시가지계획령(도시계획법)’은 1934년에 제정했는데 이는 북조선의 나진(羅津) 개발의 긴급성 때문에 만든 법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 법을 처음 적용한 도시는 나진이었고 서울은 그보다 2년 후인 1936년부터 도시계획법이 적용되었다. 이밖에 대구, 부산, 평양, 함흥 등 주요 도청소재지는 1937년부터 이 법이 적용되었다. 이 법은 지금의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을 합친 법이었고 일본법에도 없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두는 등 상당히 민주적인 법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해방 이후 계속 사용해 오다가 1962년 혁명정부에 의한 일제법령 정비 때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으로 바뀌었다.